

부산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6가단339463 판결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4647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6가단339463 판결

전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진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변론 종결 2018. 3. 13.

판결 선고 2018. 3. 2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8. 3.27.까지는 연 5%,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35,8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5.경부터 D 및 각시중은행 등의 각 지점으로부터 ATM기의 설치를 의뢰받아 ATM기를 각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 B은 2014. 11.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로부터 ATM기의 설치하는 업무를 배정받아 ATM기를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각 설치기사인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받은 설치수수료 중 90%를 피고로부터 정산 받았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가.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이상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로봇값 반환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ATM기의 설치에 필요한 기계(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구입비용을 요구받고 각 1,3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로봇구입비로 각 1,000만 원씩을 사용하였음에도 나머지 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 B의 차량구입비용 반환청구 부분

원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ATM기의 설치에 필요한 트럭의 구입을 요구받고, 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월 급여에서 트럭 할부 가액 등 월 3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19개월 합계 5,890,000원을 공제하였음에도 현재 피고 회사가 위 트럭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위 공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원고 B의 임금청구 부분

원고 B은 2014. 11.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2016. 5.분 및 2016. 6분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ATM기의 설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5. 3. 12. 원고 A이 2,000만 원을, 2014. 12. 4. 및 2015. 1.1. 원고 B이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금액이 특정한 채무의 담보를 전제로 채무의 정산 후 반환하는 것이 약정된 보증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E은 피고 회사에 납부한 2,0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인정받아자신의 사업권을 F에게 합계 3,300만 원에 양도한 사실, 당시 피고 회사는 권리금 및기술이전료 명목으로 수수된 금액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위 각2,000만 원은 설치기사들에 대한 설치기술의 전수 및 영업에 의하여 수주한 설치물량의 배분을 조건으로 한 권리금1)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로봇값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로봇구입대금으로 피고 회사에 각 1,30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돈 중1,000만 원으로 로봇을 구입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로봇구입대금의 차액 300만 원씩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로봇의 수입가격에 대한 견적 결과 대략 1,100만 원에서 1,7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로봇을 대신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수입업자와 가격절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전적으로 위임받아 수입 업무를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1,30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일뿐 그 차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B은 ATM기계 운반에 필요한 트럭의 구입과 관련한 할부금으로 매월 31만 원씩을 19개월간 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한 사실, 현재 위 트럭은 피고 회사 명의 로 되어 있으면서 피고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을1, 3, 4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TM기 설치기사인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사용할 장비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로 한 후 피고로부터 ATM기계 설치 업무를 배정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B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E은 자신의 권리를 F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할부금 납입 중이던 트럭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이를 양도의 목적물에 포함시켰으며, 피고 또한 이를 인정한 사실, ③ 또한 동일한 약정을 하였던 원고 A도 피고의 업무를 그만두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간사실, ④ 피고는 원고 B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면서 명의이전시까지 피고의 창고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후 위 차량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직접 소유할 목적으로 위 트럭에 관한 할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트럭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은 매월 30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2016. 5월 및같은 해 6월분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 B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자신이 작업한 매출총액의 90%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산의 절차를 거친바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정산 후 지급받아야 할금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

1)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3. 19.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위 돈의 사용처가 피고 회사의 운영 및 영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위 각 돈을 대여금 내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권리금으로 수수한 돈을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